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진 학 성]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30.

2. 예산안 규모

가. 총괄(예산서 9p)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
계	688,899,427	650,411,083	38,488,344	5.92
일반회계	619,857,581	584,501,948	35,355,633	6.05
특별회계	69,041,846	65,909,135	3,132,711	4.75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4억 8,834만 4천원이 증액(5.92%)된 6,888억 9,94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는 6,198억 5,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3억 5,563만 3천원이 증액(6.05%) 되었으며,
- ▶ 특별회계는 690억 4,18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271만 1천원이 증액(4.75%) 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예산서 9p)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88,899,427	650,411,083	38,488,344	5.92
일 반 회 계	소 계	619,857,581	584,501,948	35,355,633	6.05
	지 방 세 수 입	33,413,029	33,408,283	4,746	0.01
	세 외 수 입	12,037,741	12,033,241	4,500	0.04
	지 방 교 부 세	241,295,000	240,064,000	1,231,000	0.51
	조 정 교 부 금 등	20,566,677	19,956,677	610,000	3.06
	보 조 금	210,433,614	196,928,227	13,505,387	6.86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02,111,520	82,111,520	20,000,000	24.3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1,640,756	40,058,537	1,582,219	3.95
기 타 특 별 회 계		27,401,090	25,850,598	1,550,492	6.00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4억 8,834만 4천원이 증액(5.92%)된 6,888억 9,94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98억 5,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억 5,563만 3천원이 증액(6.05%) 되었고,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6억 4,07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221만 9천원이 증액(3.95%)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4억 1백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049만 2천원이 증액(6.00%) 되었음.

다.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88,899,427	650,411,083	38,488,344	5.92	
일반 회계	소 계	619,857,581	584,501,948	35,355,633	6.05
	의회운영위원회	1,023,486	1,023,486	0	0.00
	총무위원회	321,424,084	327,798,579	△6,374,495	-0.02
	산업건설위원회	297,410,011	255,679,883	41,730,128	16.32
공기업특별회계	41,640,756	40,058,537	1,582,219	3.95	
기타특별회계	27,401,090	25,850,598	1,550,492	6.00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4억 8,834만 4천원이 증액(5.92%)된 6,888억 9,94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소관별로 살펴보면

- ▶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2,3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 ▶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214억 2,40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7,449만 5천원이 감액(△0.02%)되었으며,
- ▶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974억 1,0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억 3,012만 8천원이 증액(16.32%)되었음.
-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6억 4,07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221만 9천원이 증액(3.95%)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4억 1백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049만 2천원이 증액(6.00%) 되었음.

3. 예비심사 결과

가. 의회운영위원회

- 세입·세출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나. 총무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3건에 28,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계		3건				76,500	▲28,000	48,500		
1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민간단체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	15,000	▲5,000	10,000	과다책정	P132
2	인 구 교육과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자립 기반조성	청년역량강화 지원	경남, 울산지구 JC회원대회	50,000	▲20,000	30,000	과다책정	P143
3	문 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하성단노을생 활문화센터 운영(국가직접 사업)	11,500	▲3,000	8,500	불요 불급	P161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다. 산업건설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4. 주문사항 : 해당없음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2021년도 기금 변경(안)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52,560,000	12,720,480	60,000,000	△47,279,520	105,280,48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c	총 조성규모 d=a+b-c
105,280,480	-	-	105,280,480

○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500,565	12,004	12,000	4	500,56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c)	총 조성규모 d=a+b-c
500,569	-	-	500,569

3.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 (b)	지출 (c)		
합계	153,060,565	12,732,484	60,012,000	105,781,04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2,560,000	12,720,480	60,000,000	105,280,480	△47,279,520
아립예술제 진흥기금	500,565	12,004	12,000	500,569	4

4.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1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소득 증대,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필요한 200억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림예술제진흥기금<문화관광과>[p18]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화합, 역사와 전통의 거창아림예술제 진흥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올해는 아림예술제 60주년으로 그동안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군민들과 함께 향유하고자 ‘아림예술제 60년사’ 도서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제50주년 아림예술제 아림예술마당 행사지원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예비 심사결과

- **총무위원회**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